

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신성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5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3.

발 의 자 : 신성범 · 박덕흠 · 김위상  
엄태영 · 조은희 · 정연욱  
이인선 · 박성민 · 최형두  
박성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련 업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·군·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,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미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와 관계 기관 간 업무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시·군·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10조의3 신설).



##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3(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의 설치) ① 시·군·구의 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 파악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업무
2.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절차의 대행
3.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기관·단체와의 업무 협의·조정
4.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·군·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   정     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10조의3(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의 설치) ① 시·군·구의 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 파악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업무</u></li> <li><u>2.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절차의 대행</u></li> <li><u>3.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기관·단체와의 업무 협의·조정</u></li> <li><u>4.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·군·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</u></li> </ol> <p><u>③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</u></p>

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